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

의안번호	제12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2. 7.	회부연월일	2022. 2. 7.

1. 보고이유

○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(2021.6.10.)됨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공동대응 및 고대 백제역사문화 선양과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상생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협의회의 규약을 정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제169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(안 제1~3조) 협의회의 명칭, 목적, 기능
- 나. (안 제4~7조) 협의회의 구성, 임원의 구성・선출・임무
- 다. (안 제8~12조) 협의안 제출, 회의, 의결정족수,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, 의견의 청취 등
- 라. (안 제13~16조) 실무협의회, 전문·자문위원, 사무국, 사무국의 업무마. (안 제17~23조) 경비부담, 회계운영, 수당 등, 회계보고 및 결산, 사무인계인수, 규약개정, 운영세칙

3. 검토의견

- 이 보고 건은 백제역사문화권의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상생방안과 공동대응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안으로
- O 지방자치법 제169조, 동법시행령 제96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